

# ITU-T SG3 회의 참가보고

## 1. 머리말

SG3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부문 (ITU-T) 산하의 15개 Study Group 중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수지계산 및 정산 그리고 관련된 경제적, 정책적 문제들을 논의하여 관련 권고를 작성하는 그룹으로서, 1974년 제6차 CCITT(ITU-T의 구명) 스위스 총회에서 탄생하였다. 현재는 1997-2000년 연구기간의 제 2차년도로서, 9개의 연구과제(Questions)에 대해 3개의 실무작업반(WP : working party)과 4개의 지역요금그룹(regional tariff groups)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기간 동안은 T. Matsudaira(일본)이 의장을 S. M. Al Tiwany(오만)와 W. Lucas(영국)가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의 ITU-T SG3 회의는 '97-2000년 연구기간의 3번째 회의이다. 본 고에서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인 Call-back 관련사항, 국제정산요금체제의 개편 그리고 ATM서비스의 요금, 수지계산 및 정산원칙 등에 관한 주요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2. 회의 개요

- 회의명 : ITU-T SG3(경제적, 정치적 이

슈를 포함한 전기통신의 요금 및 회계 연구) 회의

-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 회의기간 : 1998. 6. 2. ~ 6. 12.  
(참가기간 : 6. 8. ~ 6. 12.)
- 관련 문서번호 : TSB Collective-letter

6/3



## 3. 회의 참석자

이번 회의에는 세계 59개 국가 및 9개 전기통신관련 기관에서 총 243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3명이 참석하였다.

### 가. 국내참석자

성 명	기관 및 직위	내 고
장 석 윤	ETRI, 기술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Head of Delegation Competitive Safeguard 기고서 발표
이 윤 미	KT, 기술평가센터 선임연구원	IPRS 기고서 발표
조 영 희	Dacom, 전화본부 국제협력팀 대리	Call Fraud 기고서 발표

## 나. 주요 국가별 참가자수 : 총 240명

미국: 20명, 영국: 9명, 독일: 12명, 프랑스: 8명, 스위스: 2명, 호주: 3명, 일본: 11명, 중국: 8명, 싱가폴: 4명, ITU: 9명, 기타: 154명

## 4. 회의 주요 의제

이번 회의의 총회, 실무작업반(WP) 및 특별그룹인 Focus Group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가. 총회에서의 주요 의제

먼저 개회에서의 주요 의제는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의 결과 보고, 제2차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TPF) 결과 보고, ITU Council 업무 보고, 지역요금그룹 결과 보고 그리고 연구과제(Question) 9/3(용어 및 정의) 연구」이다.

그리고 폐회에서의 주요 의제는 「실무작업반(Working Party)별 회의결과 보고, 제2차 WTPF에서 채택된 의견과 관련된 SG3의 조치, 세개의 개정권고(안)의 승인 그리고 1998년 12월회의 일정」이다.

### 나. WP별 주요 의제

#### 1) WP 1/3

WP1/3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3개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연구과제 Q.1/3 연구분야의 주요 의제는 「Call-back 연구 지속, 기타 대체통화절차(refile, resale) 등 연구, 경쟁보장장치(competitive safeguard) 연구 그리고 Carriage and content 관련 정책이슈 연구」이다.

둘째, 연구과제 Q.3/3 연구분야의 주요의제는 「GMPCS 전문가그룹 보고 및 토의, 해상 및 육상 이동통신 서비스 및 이동서비스 및 UPT 관련권고 개정(개정안 있을시)」이다. 셋째, Secretary-General의 문서(WP1/3관련 국제정산요금 개혁)에 관한 추가 논의이다.

#### 2) WP 2/3

WP2/3의 주요 의제 또한 3개분야로 구분된다.

첫째는, 제2차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TPF) : world telecommunications policy forum) 채택 의견 검토이고,

둘째는, 연구과제 Q.2/3 연구분야로서 주요 의제는 「국제정산요금제도 개혁 : 정산요금표 및 추세 조사결과 보고, 정산요금 사례조사 결과 보고, 용어정의에 관한 전문가그룹 보고, 새로운 보상제도 논의 그리고 비용지향요금으로의 전환절차 논의; IPRS(int'l premium rate service) 논의 및 고국직통전화서비스(HCD: Home Country Direct Svc) 논의」이다.

셋째, 연구과제 Q.4/3 연구분야의 주요 의제는 「음향 및 TV전송 서비스 논의 및 국제위성서비스 논의」이다.

#### 3) WP 3/3

WP3/3의 주요 의제도 3개분야로서, 첫째 연구과제 Q.5/3 연구분야의 주요 의제는 「Bureau service 논의와 연락문서(liaison) 검토」이다.

둘째, 연구과제 Q.6/3 연구분야의 주요 의제는 「ATM전문가그룹 회의 보고, 권고 D.atm 초안 개선 보완, 연락문서 및 작업계획 검토, Internet전문가그룹 보고 그리고 GII Project의 영향 검토」이다.

그리고 기타 광대역서비스 검토 분야에서는 '타 SG와의 협조방안'이다.

#### 4) Focus Group

끝으로 Focus Group의 주요 의제는 「작업조직 및 권한, 업무 및 방법론 및 보고서 채택」이다.

### 5. 회의의 특징

SG3회의의 진행절차 및 이번회의의 몇 가지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G3회의는 다른 SG들과는 달리 국제 간 요금정산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동시에 총회와 WP에 참석하고 따라서 회의도 '총회 -> WP별 회의 -> 총회'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 회의는 사전에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WP별 관련 주제별로 기고서(white contribution, delayed contribution)의 작성자가 먼저 발표한 다음 이해관계국들간의 토론을 거쳐 잠정결론에 도달한 후, 이를 총회에 회부하여 필요시 재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의가 없는 경우 최종 결론에 이르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주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여 논란이 많거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전문가 또는 토론지원자를 모아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중에 짧을 내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고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회의로 이월한다.

둘째, 몇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Call-back서비스 및 국제정산요금체계 개편(accounting rate reform) 등을 다루는 WP2/3에 대해 전체 회의기간 8.5일중 3.5일이

할당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선후진국 간의 의견이 대립하여 또다시 다음 12월회의로 연기되었다. WP2/3의장 및 SG3의장은 Call-back과 국제정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 회의전에 white document 기고서를 많이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하였다.

셋째, 기타의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및 호주 등 선진국들이 회의를 주도하고 간간이 인도, 시리아, 러시아 및 트래니데드 투베이코 등이 개도국들을 대표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끝으로 오랜 회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결말이 잘 나지 않는 점과 관련하여 SG3의장은 폐회사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 결론없는 회의는 시간, 돈, 정력의 낭비일 뿐임
- 우리 SG3 멤버 모두 좀더 진지하게 생각 해야 될 시기임
- 다음 회의시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써 시장지향적인 사고로 타협을 이끌 어 내야만 함

### 6. 회의의 주요 결과

총회, WP별 그리고 Focus Group 회의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총회에서의 주요 회의결과

##### 1) 개 회

: 미 참석(본인은 6월 8일부터 참석)

## 2) 폐회

### (1) Focus Group 회의결과 보고

- 국제정산요금 개혁의 전환절차를 논의함
- 비용조사방법의 결정과 신보상제도는 WP2/3에 위임함

### (2) WP1/3회의 보고

- o Call-back의 권고안 제정 : 합의 실패, 차기 회의로 이월
- o 기타 대체통화수단 논의
- 원문에서 alternative calling 삭제함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기고서 부족으로 진전 없음
- o 경쟁보장장치(competitive safeguard)
- ITU-D와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ITU-D에 연락문서 송부를 결정함
- o Carriage and content :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 권고를 만들지 않아도 됨
- o GMPCS : 9월 16 ~ 18일 중간회의 개최로 함
- o 육상이동서비스 : IMT-2000관련 SG2 및 SG11에 연락문서 송부키로 함

### (3) WP2/3회의 간략보고

- 권고 D140의 Annex B의 Appendix II의 삭제를 요청함
- 투명성 및 비차별성 등에 대한 잠정 정의를 채택함
- 신보상제도 논의 : 타협점 도달에 실패
- 권고 D180의 개정 및 권고 D4의 내용추가 제의를 채택함
- Y2K문제와 관련 행동단계를 채택, 동 실무대책반에 연락문서 송부키로 함
- ISCS의 정의를 내린 SG2의 연락문서 채

택 및 관련 권고안 개발키로 함

### (4) WP3/3/ 진도보고

- Bureau서비스의 폐지를 결의함 : 실제 서비스 이용이 없음
- 권고안 D.atm을 6/5일의 전문가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개정하기로 함
- ATM전문가그룹과 SG13 Q2/13전문가그룹의 동시진행 임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함(9월 28 - 30일, 대전 ETRI에서)
- GII/Internet전문가그룹의 보고서 채택 및 중간회의를 요청함
- 권고 개정안 D211 채택 및 승인 요청, 그러나 이 회의후에 후기(postscript)한 후 그 결과를 보아가며 12월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함

### (5) 권고개정 관련

- D140의 Annex D('98년 말까지 정산요금을 1 SDR이하로 인하)를 러시아, 인도 및 베트남의 적용 유보하에 채택, 단 “결의1의 절차”에 따라 4주일(충분한 재검토 기간)이내에 반대의견 제시 가능함
- D170, D180 및 D500R 개정함
- D400R 및 D401R 삭제함

## 나. WP별 주요 회의결과

### 1) WP 1/3

#### 1 - 1) 연구과제 Q.3/1

「WP1/3의 연구과제 1/3는 통신서비스 및 통신망의 개발과 관련된 경제 및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Study of economic and of

the impact of national policy as they relate to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networks)이다.」

### (1) 대체통화서비스

- 대체통화서비스가 도대체 적법인가 불법인가? 불법이라면 불법서비스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주장이 제기됨
- Call-back에 대해서는 허용국과 금지국간의 커다란 입장 차이로 의견이 분분하여 합의 실패, 12월 회의에 call-back의 경제적 관점에 관한 기고서 제출을 요청함
- 세네갈이 제의한 영문 원문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혼돈을 일으키는 "alternative calling"을 삭제하여 단순히 other procedures로 함
- Refile, hubbing 및 re-origination에 대한 용어 설명, 그러나 이들 및 LCR의 연구는 기고서 부족으로 진전 없음

### (2) 경쟁보장장치(competitive safeguard)

- 한국(D63)과 호주(Com3-46)가 경쟁보장장치의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그룹 창설을 주장하는 기고서를 발표, 특히 한국은(본인 발표) 불공정/반경쟁 행위의 유형 및 이 유형별 경쟁보장장치를 체계적으로 논의함.
- 미국, 캐나다, 바레인 등은 경쟁보장장치는 국내문제에 한정되어야 하고, 또 각국마다 통신시장 사정이 상이하므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장함
- 시리아는 ITU-D에서 규제관련 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ITU-D와 SG3 간의 업무중복을 우려함
- WP1/3부의장(프랑스)은 의견이 너무 분

분하므로 ITU와 WTO의 협동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ITU-D에 경쟁보장장치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연락문서(liaison statement)를 보내기로 함.

### (3) Carriage and Content

- 이들과 같은 복잡하고도 미묘한 문제는 반드시 권고를 만들지 않아도 됨. 그러나 일반적 정보교환을 위한 기고서는 필요함.
- 이번 회의에 기고서가 없으므로, SG2에 이에 관한 새로운 정보 유무를 문의하는 연락문서를 송부하기로 함

#### 1 - 2) 연구과제 Q.3/3

「연구과제 3/3은 국제 이동서비스를 위한 요금, 수지계산 및 정산원칙의 개발(Development of charging, accounting and settlemen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mobile services)이다.」

### (1) GMPCS

- 요금 및 회계에 관한 기고서(세네갈, D61)가 자세히 발표됨. 특히 요금은 모든 비용요소의 확인과 공정한 보상을 근거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전문가그룹(IP1 및 TD2- WP1/3)은 1998년 4월 회의의 결과 보고를 통해 개도국들이 GMPCS서비스 도입시 고려해야 할 검토사항(15 checklist)을 보고하였고, 또 요금설정, 과금, 회계 및 정산 원칙의 개발에 관하여 설명함
- 전문가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점들을 고려하면서 9월 16 ~ 18일에 중간회합을 갖기로 함. 최종 연구결과는 12월 회

의에서 토의될 것임.

### (2) 해상 및 육상 이동통신서비스

- 권고 D93 개정초안 제출을 위한 소규모 초안 작성그룹을 창설함
- SG11에서 행해지고 있는 IMT2000의 Sector내 및 Sector간 조정에 대한 작업계획의 연락문서를 검토함
- IMT2000의 최적경로선택에 대한 SG2와 요금, 정산 및 회계원칙에 대한 SG11의 연락문서를 검토한 후, 각각 회신용 연락문서를 송부하기로 함.

### (3) 이동서비스 및 UPT관련 권고 개정

- 개정(안)의 미제출로 다음 회의로 연기함

#### 1 - 3) 기타

##### (1) 부정통화(call fraud) 이슈

- 부정통화는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부나 또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승인 받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이용자들은 이같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 지불의사가 없음.
- 부정통화에 의한 연간 손실은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한국의 데이콤은 정산요금의 인하, 부정통화 방지를 위한 사업자간 협조 및 이를 위한 새로운 정산제도를 주장함(D69)
- 부정통화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자문과 협동작업을 위해 SG2에 연락문서를 송부하기로 함

##### (2) 국제전기통신규약(ITR) 개정 제안

-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제전기통신규약 (ITR: int' 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개정 제안에 대해 시리아, 바레인 및 프랑스는 SG3에 ITR의 개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여, 다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2) WP 2/3

##### 2 - 1) 연구과제 Q.2/3

「연구과제 2/3은 국제전화서비스를 위한 요금, 수지계산 및 정산원칙의 개발 및 개혁 (Reform and development of charging, accounting and settlement principles for the international telephone services)」이다.」

##### (1) 국제정산요금제도 개혁

###### ○ 비용지향 요금으로의 전환

- 러시아는 자국의 특수성을 감안 비용지향 요금으로의 전환기간중 개도국과 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하는 취지의 D140의 Annex D('97년 12월 개발)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D60), 채택 되지 못함
- 미국은 Annex D의 개정과 관련하여 본문의 발효일 불변과 1 SDR미만으로의 정산요금 인하 및 추가적 인하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함(D70)
- 아프리카지역요금그룹(TAF)은 전체수익 중 국제정산수익의 비중(6%, 15%, 30%)을 기준으로 동 지역국가들을 4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적어도 각각 '98, '99, 2001 및 2003년도까지의 이행계획을 제안함 (TD7-PL).

###### ○ 이동전화 수신호에 관한 D150 개정안 논의

- 영국은 이동통신망에 수신되는 통화의 비

용의 상이를 고려하여 권고 D150 개정을 제안함(Com3-44)

- 이에 대해 캐나다(D67)는 고율의 국내 상호접속료를 인하해 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의 전국균일요금제(postalized charging system)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문제는 white기고서를 많이 제출하여 12월회의에서 추가로 검토키로 함

#### ○ 보상제도(renumeration)

- 보상제도(TD8-WP2/3)에 대해 다양하고도 장황한 논의가 있었으나, 타협점 도달에는 실패함
- 문서의 중간까지 논의하다가 회의시간 종료로 논의를 정지하고, 기고서 제출 독려와 함께 다음회의로 이월함

#### ○ 용어 및 정의

- 투명성(transparency),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상호접속료 및 요소 /기능 별요금(unbundled charge) 등 10여개의 용어에 대해 잠정정의(working definition)를 채택함
- 12월 회의전 전문가그룹 창설하여 추가 연구키로 함

#### (2) 국제할증요금 서비스(IPRS :

International Premium Rate Services)

- IPRS는 국제폰팅(또는 Audio Text)을 지칭함. 대부분의 국제폰팅은 말 다이브스, 안틸레스 등의 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폰팅사업자를 통해 유도되어진 타국으로부터의 국제호로 인한 정산수입을 기간사업자와 일정 비율로 공유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로 인한 정산적자(연간 약 600억원)의 점증, 내용의 불건전성, 청소년층의 무분별한 접속 및 요금지불 불능사태등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

- 한국의 사업자들(KT, Dacom, Onse)은 IPRS의 정보요소와 전송요소의 분리를 지지하며, 또 일반전화와는 다른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이 요금의 특별 인하를 주장함(D69)
- 이에 관한 SG2의 연락문서(TD3-WP2/3, for information on IPRS)를 검토 함
- 이번 회의 기간중 전문가그룹의 3차례의 회의결과 권고 D.IPRS(E155) 개정초안 작성(한국의견 반영) 및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묻는 SG2에 보내는 연락문서에 관하여 보고함
- 전문가그룹이 12월회의 때까지 완성된 문서 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독려함. 이에 대해 Inmarsat의 Blane씨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이 문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의 자원을 요청함.

#### (3) 국제비용분담 서비스(ISCS :

International Shared Cost Service)

- ISCS는 고객이 다른 나라의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에 대해 고국의 요금을 적용해서 전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임.
- 권고 DISCS의 보완을 위한 작업을 재촉하는 SG2의 연락문서(TD4- WP2/3)를 검토하고, 이를 채택하는 동시에 관련권고를 개발해 나가기로 함.

#### 2 - 2) 연구과제 Q.4/3

「연구과제 4/3은 이동서비스를 제외한 국제통신 위성 서비스에 관한 요금, 수지계산 및 정산원칙의 개발(Development of charging and accounting principles in non-mobil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satellite services) 이다.」

#### (1) 음향 및 TV전송 서비스

- 독일은 권고 D.4의 내용인 국제 음향 및 TV프로그램 전송을 위한 회선의 제공과 관련된 정산원칙이 방송회선의 수시적 제공과 동일해야 함을 들어 D.4의 새로운 절(new paragraph, 4. 회선의 주문과 승인 여건)의 삽입 개정을 제의하여(D66), 채택됨.

#### (2) 국제위성서비스 : 기고서 부재로 비논의

#### 2 - 3) 기타 WP2/3 의제 : 회의 첫주인 6/4~6/5일에 논의, 본인 회의 미참석

#### 3) WP 3/3 : 회의 첫주인 6/3일에 논의, 본인 회의 미참석

#### 4) Focus Group

##### (1) Focus Group의 창설

- 1998년 3월에 개최된 제2차 WTPF에서 채택된 의견 C에 의거, WTPF가 SG3의 장과 협의하여 TSB국장에게 SG3의 국제 정산요금 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WTSC-96의 결의 23에 채택된 Focus Group을 창설하였음
- '98년 5월 26일 현재 세계 각국의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Focus Group의 임무

이 특별그룹의 임무는 1998년도 이후의 비용지향 정산요금으로의 전환절차를 제안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 목표요금(분당 x DSR) 및 단계별 인하목표(년간 x %)의 설정
- 1998년도부터 특정시기까지의 적절한 시간계획 마련
- 전기통신발전의 국가별/지역별 상이를 고려한 전환계획 설계
- 보편적 서비스 기금 또는 기타 부담금의 최대 기여수준 결정

##### (3) 4개의 작업방법론 논의 : 특정 방법론 선택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

- 가격상한 결정 : 비용모형 보다는 임시적 방법(interim mechanism) 개발에 의해 실현 가능함
- 목표범위(target ranges) 지정 : 예, TAF의 제안[나. 2-1) (1) 참조]
- 비용요소의 추정 : 9개의 사례조사로 부터 유추함
- 최저 실현요금(best practice rate) 또는 최저비용 경로선택(LCR: least cost routing) : 기존 시장하의 최저요금 정보의 수집으로 가능함

##### (4) 회의 결론

- 비용 조사방법의 결정(D64)과 신보상제도 (TD8-WP2/3)는 WP2/3에 위임함
- 9월 1일 ~ 3일의 두 번째 Focus Group 회의에서 추가적 논의를 위한 e-mail을 통한 의견교환 및 기고서(목표요금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제출을 독려함

## 7. 차기회의 일정

차기회의는 SG3 본회의 이외에도 ATM 및 GMPCS의 전문가 임시회의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 1) SG3회의

ITU-T SG3의 '98년 제2차 회의가 1998. 12. 7. - 12. 12의 기간중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국제정산 요금 개혁, Internet/ GII 이슈, B-ISDN/ATM 과금 원칙 그리고 기타 WP1/3, 2/3 및 3/3의 주요 연구과제 논의」이다. 그리고 1999년 회의는 6/2 - 6/11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 2) ATM전문가 임시회의

ATM분야의 전문가 임시회의는 SG3 WP3 /3의 「Q6/3 : B-ISDN, Multimedia, ATM 및 GII 서비스 분야」와 SG13(General Network Aspects)의 「Q2/13 : Network Capability for Support of B-ISDN based Services」의 회의가 같은 장소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진행될 예정으로, 회의장소는 대한민국 대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이며 회의기간은 '98년 10월 19일(월) ~ 21일(수)이다.

이 회의의 한국측 대표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 철수(ETRI 교환·전송기술연구소 선연), 최 준균( ICU 통신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 윤미( KT 기술평가센터 선연)씨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 3) GMPCS전문가 임시회의

GMPCS전문가 임시회의는 1998년 9월 17일(목) ~ 18일(금)의 기간동안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8. 맷음말

이번의 SG3회의는 비록 결론이 별로 없는 조금은 지리한 회의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간에 각 국가의 특정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및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SG3 차원에서는 권고 D170, D180 및 D500R을 개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D400R과 D401R은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ATM서비스의 요금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권고 D.atm의 초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며 빠르면 아마도 12월회의에서는 권고가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G3의 요금, 수지계산 및 정산원칙 분야에서 실질적인 세계적 전문가로서 선진국 대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와 관련된 사회과학의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특히 뉴미디어의 신규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지식도 겸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정보통신분야의 사회과학과 기술의 양분야를 동시에 훤히 掌握하는 안목의 바탕위에서 참신한 사고의 전개와 국가이익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회의의 전반적인 흐름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요 의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